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공증업무 주요 질의 회신

질의1.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 질의내용

공증인 사무소 작성 채권자 전○○, 채무자 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채권자가 사망하였고, “망”의 채권자는 슬하에 자녀는 없으며, 김△△ 배우자만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망” 전○○의 부모가 법정상속분이 있으니 승계집행문을 요구하고 있는바, “망”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경우 직계인 부모한테 승계집행문부여 발급하여주는 것인지 배우자가 있는데도 “망”의 부모한테 승계집행문부여를 하는 것은 아닌 듯싶고, 부모도 법정상속지분이 있지만 공증사무실에서 승계집행문은 배우자 김△△에게만 승계집행문부여를 발급하여 주면 되는 것 아닌지 여부

▶ 답변

채권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부, 모)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의 상속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분에 따라 가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배우자와 따로 망인의 부, 모가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가분채권에 해당한다면, 부, 모에게 각 각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면 됩니다.

질의2.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에 관하여

▷ 질의내용

발행인이 5인이고, 수취인이 7인인 액면 금 ○○○인 약속어음을 공증하고, 이후에 채무자 5인에게 금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7인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바 있고, 이 후 채권자 7인 중 한 개 회사에서

채무자 5인에 대하여 가지는 액면 약속어음금 중 7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약속어음상의 표시금액은 각 채권자별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만 표기되어 있음)의 채권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단독으로(약속어음 수취인 7인 공동신청이 아닌 그 1인으로부터 일부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단독신청) 자신의 약속어음금상의 자신의 지분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약속어음액면금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고 있는바,

채권자 7인에 대하여 전체 금액에 대한 어음공증이 이루어지고, 또한 채권자 7인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집행문이 발행된 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1인이 위 약속어음액면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금액(1/7)에 대하여 채권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채권자(7인)의 공동명의로 인한 공동신청이 아닌 채권 양수를 주장하는 제3자가 단독으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약속어음금상 채권 양수라는 어음상 배서 등에 의하여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신의 양수 또는 자신의 채권금액에 대한 표시가 없는 상태이고, 채권자 7인 공동

신청이 아니라 1인이 단독으로 위 공증 약속어음(수취인 7인, 발행인 5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 답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어음채권채무관계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은 당연한바, 어음채권은 어음이라는 유가증권에 표창되므로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여러 명으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중 1인으로부터 어음상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공증 법령 제·개정 관련 주요 활동

❶ 공증인 정년 한시적 80세 적용 및 장부 인증권한 협회장 이관 법령 개정

① 공증인 정년 관련 공증인법 개정

우리 협회 차원에서 공증인 정년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80세로 적용하여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학재 의원 대표발의의 의원입법을 추진, 2011. 12.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2. 1. 17.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 공증인법에 따른 종전 정년 75세를 오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정년 80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② 장부 인증 권한 협회장 위탁(이관) 시행

종전 지방검찰청 검사장 권한으로 되어 있던 장부 인증 권한을 협회장에게 이관시킴으로써 협회와 공증인의 유기적 관계를 증대시키며, 협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관리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협회의 유일성, 강제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각 지방검찰청 관할별로 행사되던 장부의 인증권한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국가 사무인 공증 업무의 정

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증인법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임.

❷ 공증인 수수료 규칙 유권해석 법무부와 협회 간 의견 조율

공증인 수수료 규칙과 관련하여 ① 실제 공증 촉탁 사례 중에서 수수료 산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은 무엇인지, ② 수수료 규칙 미비로 수수료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사안들은 무엇인지, ③ 규칙 해석이 모호하여 회원 사무소 별로 수수료 산정에서 혼란되는 사안들은 무엇인지, ④ 기존에 잘못된 법률 해석으로 인하여 감액된 수수료 사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회원 사례 조사 설문을 실시하고, 협회에서는 2012. 8. 28. 법무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을 건의함.

□ 다 음 □

1.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 공증인은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의 청구에 따라 송달증명원이나 송달불능증명원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나 그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증인이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본인에게 통지한 것이 반송되는 경우, 반송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반송료 지급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반송료를 미리 받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 반송료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받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재 실무상 계약서를 인증할 경우에 같은 번호로 두 개의 계약서나 두 개의 의사록을 인증하고 있으나, 이는 공증인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같은 내용으로 된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하여 증서별로 무조건 똑 같은 수수료를 받는다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규칙에 이러한 경우에는 1통을 초과하는 것은 기본 가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에 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급부의 내용이 물건이나 권리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의 급부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소가 산정할 때에 준하여 소유권이 아닌 점유 등의 경우에는 소유권 가액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로 인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위임장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잘못된 공증으로 인하여 민사책임을 지게 될 염려가 가장 높은 공증 중의 하나입니다. 그에 비하여 그 수수료는 증서로

작성하는 경우는 1만원, 인증 수수료는 3,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위임장에 관한 수수료 규정은 전문직이 법률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가령, 소송위임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수수료는 현재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시간당 2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입니다. 법률행위에 대한 증서작성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급부를 목적가액의 기준으로 삼은 것처럼, 사실에 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된 증서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나 의무의 가액을 목적가액으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7. 법률행위에 대한 문서가 아니고 제3자로서 진술서나 사실확인서에 대한 수수료는 현재 해석상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 기본액의 반액을 기준으로 하여 12,500원을 받고 있으나,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수수료는 그 사실을 공증을 통하여 증명받음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이 촉탁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에 대한 증서작성과 법률행위를 기재한 사서증서의 인증과 같이 서로 대응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사실

확인서에 대한 인증수수료는 별도로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8. 현행 의사록 수수료는 이사회나 주주총회나 일률적으로 3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이는 공증인의 업무 부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너무나 저렴합니다. 이를 자본금액에 연동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9. 하나의 원본 문서에 그것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원본 문서를 첨부하여 인증을 하는 것의 문제(초청장에 신원보증서나 귀국보증각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그에 관한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무부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 유권해석

상기와 같은 협회 측 의견제시 후 법무부에서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전반에 걸친 유권해석을 검토,

- ①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산정 원칙은,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어음·수표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증서 장수가 4장 초과 시 초과 1장 당 500원 추가
- ②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 결정 표준시는 증서작성 착수 시점으로, 법률행위 중 채권행위의 목적은 급부, 물건행위의 목적은 물건이지만 실

무 상 물건행위가 독립적으로 공증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계약 당사자의 급부의 내용은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기준은 쌍방 촉탁의 경우 쌍방 급부 가액을 합산, 일방 촉탁의 경우 일방 급부만을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으로 하되, 일방촉탁에서 대립되는 상대방의 급부의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 의하도록 함.

- ③ 법률 행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는 각 촉탁인 별 급부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ex. 외국대학 입학 시 부모가 작성하는 재정보증서)나, 사실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의 촉탁인이 한 가지 사실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동일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를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
- ④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와 관련, 대주의 급부는 '약정 금원 대여 의무의 이행'이고, 차주의 급부는 '약정 원금 반환 및 이자 지급 의무의 이행'(민법 제598조)으로, 대주와 차주의 각 급부를 합산한 금액이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다만, 차주 지급이자는 규칙 상 급부 가액에 미산입 이자부)'임.
- ⑤ 그 외, 승인증서 작성 및 사실실험 공정증서 수수료, 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 수수료, 위임장·수취서·거절증서 작성 수수료,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초청장 작성 수수료, 법인 의사록 인증 수수료 등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전반에 걸쳐 유권 해석을 내림.

4 법무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유권해석에 대한 협회측 추가 의견 제시

법무부의 상기와 같은 유권해석에 대하여 협회는, 2012. 10. 15. 다음과 같은 수정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권해석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다 음 □

(1) 법률행위 공정증서 수수료에 관한 유권해석(설명)과 관련하여

가. 공증인수수료규칙 개요설명 및 질의 회신(이하 “규칙 설명”이라 함)

법률행위 중 채권행위의 목적은 급부, 물건행위의 목적은 물건이나 실무상 물건행위가 독립적으로 공증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라는 부분은,

물권행위의 목적과 물건행위의 목적물은 다른 개념으로서, 물건은 물건행위의 목적물일 뿐 물건행위의 목적이 아

니라는 점, 물건행위의 목적가액은 물건행위로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관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물건행위로 인하여 변동되는 물건의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주로 채권행위이지만 물건행위에 대하여도 공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준물권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실무상으로도 공증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대안을 개진합니다.

- 아 래 -

○ 법률행위 중에서 채권행위(의무부담 행위)의 목적가액은 급부의 가액이고, 처분행위의 목적가액은 처분행위로 인하여 변동되는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이라고 할 수 있음.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계약)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의무를 부담지우는 급부를 정하고 있으면 각 급부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야 함. 이 때 쌍방의 급부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처분행위 중 물건행위의 경우에는 그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독립적으로 그것만을 공증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드물 것이지만 채권양도나 지적

재산권의 양도 또는 채무면제 등과 같은 준물권행위에 대하여는 공증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임(실무상으로는 공정증서의 작성보다는 사서증서의 인증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임).

나. 규칙 설명 중에서

상대방의 의사가 이미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불필요하여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법률행위 공증 작성 공정증서의 보충 또는 변경이라는 부분은,

전자는 1, 2, 3호에 대한 설명이고, 후자는 4호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대안을 개진합니다.

- 아 래 -

○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1호는 「승인허가 또는 동의」는 직접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해 주는 법률행위 즉, 이른바 보조행위를 의미하고(승인허가는 승인·허락의 오류), 제2호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하여 하는 해제나 합

의해제를 의미하며, 제3호는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의미하므로 유언의 일부를 취소하면서 새로 추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규칙 제14조 제4호의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은 이미 공정증서로 작성된 법률행위를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된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경우에는 이를 그 정본이나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증 수수료에 관한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가. 규칙 설명 중에서

법률행위 공정증서와 달리 장수 추가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음이라는 유권해석부분은,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에도 그 장수에 따라 추가수수료를 받고 있는 공증실무와 다른 해석입니다.

공증실무상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에도 그 장수에 따라 추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정증서의 작성과 달리 인증한 사서증

서의 사본을 보존할 의무가 없었고, 그에 따라 사서증서의 장수에 따른 추가수수료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증한 사서증서의 사본에 관한 보관필요성을 느끼고 공증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서증서인증서를 사본하여 보존하게 된 것을 계기로, 대한공증협회(現 대한공증인협회의 전신인 임의단체)의 건의에 따라, 인증한 사서증서의 사본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에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나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서 인증한 사서증서의 사본도 보존하도록 명문 규정(서식규칙 제10조 제2항, 보존규칙 제5조 제1항 제5호)을 신설하여, 인증한 사서증서의 사본 보관 의무가 정식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고, 2009년 공증인법 개정으로 법률로 그 보존의무가 규정되었습니다(공증인법 제57조 제4항).

이와 같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사본을 보관할 의무가 공증인에게 부여되면서 당연히 그 장수에 따라 추가수수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 공증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서증서의 장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사서증서의 장수가 수십 장 혹은 수백 장에 달하는 등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어느 사무소에서나 장수에 따라 추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

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서증서인증서의 사본을 작성함에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생성된 사본을 보관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에서 법적인 근거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얼마의 추가수수료를 받아야 하느냐와 관련하여서는 ① 사서증서인증서(인증서 표지와 공증인의 서명날인용지포함)의 장수당 500원씩을 추가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는 견해, ② 사서증서인증서의 장수당 250원을 추가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는 견해, ③ 4장을 초과하는 사서증서인증서의 장수당 500원씩 추가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 ④ 4장을 초과하는 사서증서인증서의 장수당 250원을 추가수수료로 받아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공증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각건대, 추가수수료는 사서증서인증서의 장당 500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은 그에 관하여 보관할 일이 없지만, 사서증서의 인증서사본은 일정기간 보관하기까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발생이라

는 측면에서 볼 때, 사서증서의 인증서의 사본작성과 그 보관비용이 공정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작성 수수료보다도 더 높게 평가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증인은 사서증서의 인증서사본의 작성 보관과 관련하여 공정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의 작성수수료에 준하여 장당 500원을 추가하여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 법률행위 공정증서와 달리 장수 추가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음」이라는 유권해석 부분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나. 규칙 설명 중에서

「초청장을 인증하면서 신원보증서, 귀국보증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 관하여」 후문 즉, “- 그러나 촉탁인이 인증대상 문서를 초청장으로 특정하면서 신원보증서 등 다른 서류를 그것에 첨부하여 달라고 요구할 경우 공증인은 초청장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규칙 제20조 제1항,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면 됨”이라는 설명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위 설명은, 동일한 사람이 작성한 두 개의 사서증서에 대하여 그 중 하나를 다른 하나에 첨부하여 인증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시킨 사서증서상의 날인이나 서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첨부시킨 사서증서에 대하여 날인이나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인증의 효과가 첨부시킨 사서증서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날인이나 서명이 서로 다르다 하여도 인증대상 문서에 첨부된 문서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인증의 효과가 미친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첨부시킨 자료는 사서증서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공증인은 사서증서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은 사서증서 전체를 살펴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첨부시킨 사서증서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인증의 효과가 미친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자가 동일한 사서증서 원본 두 개 이상을 하나로 묶거나 첨부서류 형태로 하여 하나의 공증사건으로 인증을 촉탁할 때 공증인이 그대로 인증을 부여하는 사무처리방식을 허용하는 경우 가액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현행 공증인 수수료 체계나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 하나의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인증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만일 이

러한 사서증서에 대하여도 그대로 인증을 부여하여야 한다면, 누구라도 가령 영수증에 계약서를 첨부시켜 인증을 촉탁하는 것과 같이, 수수료가 저렴한 사서증서를 인증대상 사서증서로 삼고 여기에 수수료가 비싼 사서증서를 첨부시켜서 인증을 촉탁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초청장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작성한 두 개 이상의 사서증서를 합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보낼 서류가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각 사서증서의 여백이나 사서증서에 부전지를 붙여 여기에 공증인이 인증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인증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증서식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될 때 이와 같은 경우의 인증사무처리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지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촉탁인 등이 신원보증서나 귀국보증각서를 첨부한 초청장에 대하여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 그것을 분리시켜 따로 따로 인증을 촉탁하게 하여야 하고, 촉탁인 등이 굳이 하나의 문서로 묶어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여백에 인증문을 기재하거나 부전지를 붙여

그곳에 인증문을 기재하여 각각의 사서증서에 대하여 인증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청장을 인증하면서 신원보증서, 귀국보증서 등을 첨부한 경우의 설명은 “동일한 작성자가 두 개 이상의 원본을 하나로 묶거나 하나이 서류에 다른 서류를 첨부시켜서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분리시켜 인증을 촉탁하도록 함”이라고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에 대한 공증과 관련하여서는 사증발급제도나 그 밖의 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는 과거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그에 대하여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청장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 초청인의 진정한 초청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귀국까지 보증하는 의미의 문서는 아닙니다. 초청장에 귀국보증각서를 첨부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 초청장에 대하여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시기에, 사증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해외주재공관에서 초청장에 귀국보증각서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종종 요구하자 이러한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귀국보증각서를 첨부하여

초청장을 작성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청장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문서임에 비하여, 신원보증서는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그 문서의 성격이 초청장과 다르지만, 사증발급 신청시에 체류자격별 사증의 종류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관련 별표 5.(사증 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신원보증서에 대하여도 초청장과 마찬가지로 과거 이를 반드시 공증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공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증발급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외주재 공관에서 임의적으로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에 대하여 당사자들 스스로 서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초청장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청장에 대하여 수수료규칙에서 별도로 취급하여야 하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초청장에 대한 인증수수료도 일반적인 사서증

서의 인증에 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르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기타 공증 수수료에 관한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규칙 설명 5. - ㉞ (20쪽) 중에서

의사록 인증시 전자등기를 할 경우 안건 별로 등기신청서를 따로 써야 하는 이유를 들어 의사록을 3부 이상 교부받기를 원하는 경우 수수료에 대한 설명에 관하여, 규칙 설명에는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 인증을 마치면 등본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원본 2부는 촉탁인에게 교부(1부는 촉탁인 보관용, 1부는 등기소 제출용)하므로 하나의 인증절차에서 의사록 3부 이상 교부하여서는 아니됨」이라고 되어 있으나,

공증인법에 따르면 이는 분명 잘못된 설명입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4항에서 준용하고 하고 있는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사록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의사록 원본 2통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중 한 통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다른 한 통은 (인증을 부여한 다음)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출한 사서증서(원본)에

대하여 그것을 사본하여 공증인이 보관하고 원본에 인증을 부여한 다음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의사록이나 정관의 인증 방법과 사서증서의 인증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초안의 설명은 오류가 있습니다.

한편 의사록이나 정관의 인증은 물론 어떠한 인증이라도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경우에 동일한 번호에 대하여는 하나의 인증만을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증인사무소에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의사록(원본)이나 정관(원본) 3 통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 통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다른 2통에 대하여 동일한 번호로 인증을 부여하여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증실무는 분명히 잘못된 업무처리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공증실무는 더 나아가 계약서를 인증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계약서 2 통을 제출하는 경우에 동일한 인증번호로 2통의 사서증서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공증사무처리는 분명히 바로 잡혀야 됩니다. 다만, 동일한 수통의 증서에 대하여 같은 무렵에 인증받고자 하는 촉탁인의 입장에서 보면, 똑

같은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 통을 초과하는 나머지 통수의 인증수수료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경우에는 가액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수수료로 하되, 원래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가 그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5 집행증서 범위 확장 골자 공증인법 개정안 국회 계류

- 집행증서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마련된 정부 제출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말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법무부의 빠른 재입법 절차 추진으로 2012. 7. 31. 국회에 다시 접수, 법제사법위원회에 8. 1.자로 회부되고, 2013. 2. 19.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협회에서는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 예정
- 동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I. 개 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정부
 나. 발 의 일 : 2012. 7. 31.
 다. 회 부 일 : 2012. 8. 1.

(2) 제안이유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표현을 보완·수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집행증서 대상의 합리적 확대(안 제 56조의3 신설)
- 1) 현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증서)는 금전 지급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공증 대신 제소전 화

해가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제소전 화해는 지위가 열악한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강제되는 등 남용 사례가 있으므로, 공증의 기능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공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2)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되,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 따라 건물을 반환하기 전 3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반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함.
- 3) 건물 등의 인도와 보증금 등의 반환을 함께 공증하여 부동산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건물·토지·특정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과 감독이 가능한 집행증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전 화해 남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선서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 57조의2 및 안 제90조 신설)

- 1)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공증인이 그 선서사실을 인증하는 선서인증의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거짓으로 선서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따르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2) 선서자가 증서와 선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선서할 수 있도록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서로 선서하도록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
- 3) 선서인증의 실효성과 효용성을 높여 공증의 분쟁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I. 검토 의견

(I) 집행증서 대상범위의 확대

가. 개정 내용

-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다만,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 따라 건물을 반환하기 전 3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그 집행증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환할 보증금 등의 지급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또한,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함.

나. 검토

- 집행증서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이며, 확정판결 등과 함께 집행권원이 됨. 그런데 현행법상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는 금전·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의 급여 목적에만 한정되어 있음.¹⁾

현행	개정안
<신설>	제56조의3(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로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공증인법」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제56조의3(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

② (현행과 같음)

□ 따라서 현행 집행증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인도 등에 관하여는 민사상 아무런 다툼이 없음에도 공정증서의 대용물로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함. 제소전화해는 집행증서와 달리 무

제한기판력이 있어 강행법규 위반을 정당화하고 재판상 다투는 길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제소전화해의 남용으로 인해 법원은 재판이 아닌 당사자 간 성립된 계약에 관해 확인하는 공증적

역할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사법기능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건물인도 등 대체로 정형화된 행위를 집행증서의 대상범위에 포함시켜 공증의 본래기능을 살리되,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원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집행증서의 대상을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까지로 확대할지 여부는 현행 집행증서의 한계, 제소전화해의 문제점,²⁾ 집행증서 대상 확대의 필요성과 실효성, 외국의 입법례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또한,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장기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집행증서가 작성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는 집행증서 작성기간에 관하여 임대차관계 종료를 원인

으로 임차건물을 반환해야 하는 날의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밖에도 통상적 이사 준비기간 등 청산기간을 고려한다면 위 기간을 6개월 등으로 늘리거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2개월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선서인증제도의 개선

가. 개정 내용

- 선서자가 증서와 선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선서할 수 있도록 선서의 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서로 하게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후 재판과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2) 제소전화해의 경우 순수 인지·송달료는 공증수수료(33,000원~300만 원)의 반액을 약간 상회하나, 변호사비용을 더하면 약 15배가 되고, 시간은 2.5~3개월 소요(공증은 약 1시간 소요)

3) 집행증서의 대상을 특정 동산, 건물 등의 인도청구에까지 확대한 입법례: 대만, 독일(1997.), 오스트리아(1962.) 등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 ③ (생략) <u><신 설></u> ④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합니다”라고 적힌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하게 한다. ⑥ (생략) <u><신 설></u>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촉탁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증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하여야 한다. ⑥ ----- ----- ----- --- 적을 수 없거나 읽지 못하는 경우나 -----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66조의5제2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자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의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에 적힌 거짓 내용을 정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나. 검토

- 현행법상 사서증서의 인증을 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선서를 하는데, 이러한 선서인증은 증서의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선서 후 아무런 제재가 따르지 않는 등 진실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선서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사전적 법률분쟁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사법기능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선서인증의 선서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선서의 방법과 관련하여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

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음. 선서서에 따라 구두로 선서를 하고 기명날인·서명하는 외에 선서내용까지 자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거짓선서를 방지하고 진실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통상적인 선서의 방법에 비하여 촉탁인에게 지나치게 번거롭고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거짓 선서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할지 여부는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의 도입 필요성과 제재의 종류, 거짓 선서자가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 여부, 유사 입법례,⁴⁾ 외국의 입법례⁵⁾ 등을 종합적

4) 「형법」상위증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52조 제1항)

「민사소송법」-당사자신문 시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70조 제1항)

- 소명에 갈음한 선서 시 거짓 진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301조)

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참고로, 2008. 12. 공증인법 개정안(정부 제출)에서는 거짓 선서에 대한 형사처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국회심사 과정에서⁶⁾ 우선 선서인증제도만 도입하고 제재규정은 추후 입법하기로 하여 삭제되었음.

□ 나아가, 개정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를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있으나, 그 관할을 거짓 선서한 사람의 주소지 지방검찰청으로 할지, 아니면 행위지 즉 선서인증을 한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으로 할 것인지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법무부장관 예방 및 법무실장 간담회에서 협회 업무 협조 요청

① 집행증서 범위 확장 공증인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협력 요청

②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재출범 요청

※ 상기 개정 법률안 이외 공증직역 확대 및 선진 공증제도 도입, 협회 기구 조직 변경, 공증수수료 현실화 등을 위하여, 지난해 활동을 마감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재출범 필요 요청

※ 특히, 공증인수수료의 경우 2010년도 법 개정으로 사서증서 인증수수료의 상한(중전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액) 등이 축소되고,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 인증을 면제하면서 정관 인증 촉탁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대부분 공증사무소에서 현실적으

5) 외국의 입법례

	미국	독일	일본	대만
인증방식	선서진술서 (Affidavit)	선서신문	선서인증서	선서신문
허위선서 제재	위증죄로 처벌 (단, 州마다 상이)	위증죄로 처벌 (1년 이상의 자유형)	10만 엔 이하의 과료	1년 이하의 징역 3만달러이하 벌금

6) 당시 법원행정처 등은 거짓 선서를 한 촉탁인이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실제 적 진실 발견이 저해되고, 민사소송 당사자의 거짓 진술 시 제재(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었음.

로 보조자 인건비, 관리비 등 사무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바, 물가 인상율에 따른 공증인 수수료 현실화 필요에 따른 재출범 요청

※ 이와 관련, 법무부에서는 예산 관계상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재출범은 2012년도 중 곤란하다는 판단에, 별도의 공증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T/F 구성

③ 법무부와 공동주최 공증주간 행사에 인력 및 예산 지원 요청

④ UINL 산하 CAAs 2012년도 정기회의 개최 예산 등 지원 요청

※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정기회의 개최는 CAAs 회원국 협의에 따라 각 회원국(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이 매년 1회씩 순차적으로 최소 1회 개최기로 하였고, 2010년 일본, 2011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2012년도에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내부 사정상 금년 회의 주치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UINL 측에서는 지난 5월, 2013년도 회의 개최 예정인 한국측이 우선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3차에 걸친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지난 11. 26.~27.까지 롯데호텔에서 CAAs 회원국 중심으로만 개최함

⑤ 법의 날 행사 등 주요 법조 행사에 협회 참석 요청

⑥ 공증인 등에게도 법무부장관 표창 이외 훈·포장 등 포상 실시 요청

⑦ 협회 실적 회비 도입을 위한 확정일자부 등 일부 서식 유연화 요청

⑧ 공증서류 통합보관창고 시설 구축에 따른 정부 예산 지원 필요 요청

⑨ 전자공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요청

⑩ 임명공증인 신분증 등 제작 요청 등 건의

제6회 공증주간 행사 개최



1 개요

- 협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증제도가 사인간 거래시 증거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켜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를 조성하고, 법질서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수단임을 적극 알리기 위하여 2012. 11. 26.(월)~30.(금)까지를 “제6회 공증주간”으로 선정, 대국민 홍보를 시행
- 금년은 근대적 공증제도 도입 100주년이 되는 해(1912년 조선민사령, 1913년 조선공증령에 의해 공증제도 시행)로서 역사적 의미가 부여됨.
- 이를 위해 11. 26.(월) 11:00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공증인협회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공증주

간 선포식”을 개최함

- 선포식에서는 △ 유공 공증인(정차두 공증인, 김종환 대전종합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에 대한 표창 및 협회 발전 유공 회원(제16대 송정호 협회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 △ 주요 내빈 공증주간 기념 “공증은 국민의 신뢰를 지켜드립니다” 족자 서명 이벤트 등 진행
- 이번 제6회 공증주간 중, 아시아 지역의 공증인 및 공증제도와 관련한 국제회의로, 국제공증인협회(UINL) 산하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2012년도 국제회의를 한국에서 개최(11. 26.~27.)함
- 이외에도 공증주간에는 △ 공증인 보조자 교육 등 연수 실시(11. 30. 4시간) △ 홍보 현수막 게시(전국 검찰청 및 지자체 LED게시판) 및 공증제도를 소개하는 포스터와 리플릿 제작·배포 △ TV·신문·뉴스 인터뷰 등 언론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증의 이해 폭을 넓혀드리며,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최고 수단이 “공증”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

2 제6회 공증주간 기간

2012. 11. 26.(월) ~ 2012. 11. 30.(금)

※ 종전에는 공증인법 제정일(9. 23.)을 기준으로 1주일을 공증주간으로 설정

하여 시행하였으나, 아시아 지역 국가의 공증인 및 공증제도와 관련한 국제회의인 국제공증인협회(UINL)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2012년도 정기국제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한 이번 국제회의를 제6회 공증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개최함(한국에서의 최초 공증제도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높음)

3 제6회 공증주간 행사 주최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 공동 주최

4 제6회 공증주간 명예공증인 겸 홍보대사

제4회 공증주간 때부터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KBS 황수경 아나운서

5 제6회 공증주간 행사 내용

(1) 행사 기본 내용

- 공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초점
-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공증 관련 유관기관 장(長)이 참석하는 선포식을 공증주간 첫 날 개최
 - ※ 선포식 등 대외 행사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음.
- 제2회 공증주간부터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연예 또는 방송계

인물을 법무부 명예공증인 겸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주간 홍보대사로 위촉

- ※ 제4회 공증주간에 명예공증인 및 홍보대사로 임명·위촉됐던 KBS 황수경 아나운서가 제6회 공증주간 홍보대사로 계속 활동
- 전국 검찰청(지청 포함)에 홍보 현수막 게시
- 공증제도 홍보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무료 배포
 - ※ 전국 공증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부처, 법원·검찰, 국·공·시립도서관, 변호사회, 법조유관기관 등에 공증제도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부착



〈공증주간용〉



〈연중계시용 포스터 겸 리플릿〉(앞면)



〈리플릿〉(뒷면)

○ 아시아 지역의 공증인 및 공증 제도와 관련한 국제공증인협회(UINL)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2012년도 정기 국제회의를 한국에서 최초로 11. 26.(월)~27.(화) 이틀 동안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 한국 공증제도의 위상을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CAAs 회원국을 포함하여 UINL 전체 회원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

※ 각 국 공증시스템의 효율화(직역확대 및 공증의 접근성) 및 노약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증인의 역할 등 논의

○ 지방자치단체 LED 전자계시판을 활용한 홍보문구 표출

○ 신문사와 TV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 공증인 보조자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공증업무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대국민 공증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공증인 보조자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공증인 보조자 교육” 시행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2. 11. 30.(금) 14:00~18:00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자 선정 :

각 회원사무소 공증인 보조자 1인 특정
일 기준 접수
총 147개 회원 사무소의 공증인 보조자
152명(각 사무소별 1명. 단, 5개소는 2
명 연수)

△ 교육주제 및 강사 :

- ① 공증의 중요성 및 보조자 윤리 교육
(40분) / 강사 : 법무부 박혁수 검사
- ② 공증감사 주요 지적 사항
(50분) / 강사 : 법무부 이창균 계장
- ③ 공증실무 주요 사항(질의·회신) 설명
(50분) / 강사 : 협회 남상우 법제이사
- ④ 공증인 수수료 규칙 설명
(50분) / 강사 : 협회 남상우 법제이사



(2) 제6회 공증주간 선포식 개최

○ 일시 · 장소 :

2012. 11. 26.(월) 11:00~12:00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

- 김진환 대한공증인협회장
- 길태기 법무부차관

(장관님 격려사 대독)

황운성 법무부 법무실장

장영수 법무과장

•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님 격려사 대독)

임정현 기회조정실장

양재호 기획제2심의관

•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 노승행 대한공증인협회 운영위원장

• 송정호 직전 대한공증인협회장

○ 선포식 동반 행사 및 이벤트

- 모범 공증인 3명 선발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 협회 발전 유공 회원에 대한 협회장
감사패 증정

○ 이벤트 : 서명식

공증주간 행사 모토인 “공증은 국민의
신뢰를 지켜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족자
에 참석 내빈 각 서명 후, 전체 공증인을
대표하여 노승행 운영위원장(제15대 협
회장)이 국민에게 “본직의 면전에서 서
약하였음을 인증합니다”라고 확인하는
서명날인 인증행위 이벤트 시행

6 선포식 행사 주요 인사 인사말

(1) 식사(式辭) - 김진환 대한공증인협회장

존경하는 길태기 법
무부 차관님, 권순일 법
원행정처 차장님과 신
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을 비롯한 내
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공증 가족 여러분 !

오늘 대한공증인협회가 법무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공증주간 선포식”에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대적 공증제도는 1912년 조선민사령 제4조에 의하여 재판소의 업무로 처음 도입되었고, 다음 해인 1913년 조선공증령에 의하여 전문 공증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961년 공증인법이 제정·공포되어 우리 제도로 정착·발전을 거듭하였으며, 2010년 공증인법의 전면개정으로 대한공증인협회는 회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재출범하는 등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공증제도 도입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동안 공증은 국민들 속에서 거래의 증거를 확실히 보전하여 분쟁을 미리 막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예방사법 제도로 뿌리내려 법치주의 창달에 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설정된 “공증주간”의 캠페인은 우리 공증제도의 역사를 되새기는 의미가 깊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공증인협회(UNIL) 산하 아시아지역위원회(CAAs)의 정기 국제회의를 오늘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공증제도의 선진화·국제화를 앞당기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뜻 깊은 행사에 즈음하여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증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선배 공증인님들과 전국의 공증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올리며, 혁혁한 공로로 오늘 영예의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공증 가족 여러분 !

이제 우리 공증 제도는 다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새롭게 출발하여 국민들과 더욱 가까이 거리에서 사랑받는 제도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인구 5,000만 명의 20-50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인정사회의 전통 탓인지 아직도 증거를 남기는 투명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불필요한 다툼과 남소(濫訴)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형사고소 당한 사람 수는 67배나 많고, 인구 10만 명당 인원으로 따지면 171배나 됩니다. 민사사건도 1심 기준으로 2배, 인구 10만 명당 사건 수는 5배가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서로 믿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이나 거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중요한 사실관계나 유언 등도 미리 공증해 둔다면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미리 차단하고 자기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 공동체의 규범의식, 네트워크의 결속력이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더욱 축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은 아직 OECD 평균의 1/3 수준이라는 아쉬운 지적이 있습니다.

공증은 국민간의 신뢰를 지켜주는 공적 인증 제도입니다. 계약 문화가 국민 사이에 확고히 자리 잡고 공증제도가 이를 떠받칠 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로마법의 원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정착되고 우리나라가 원칙과 질서가 있는 건강한 신뢰사회, 성숙한 법치국가로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전국의 공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 !

오늘 뜻 깊은 공증주간 선포에 즈음하여 우리 공증인들은 법이 지배하는 신뢰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공증인의 책무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사무의 대행자로서 “나라가 세운 증인”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되새기는 한편, 아직 인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공증의 기능과 중요성을 널리 홍보·제도화하면서 풍부한 전문지식과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고 친절히 봉사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협회 차원에서도 공증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공증인과 업무보조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공증사무소의 역량과 품격을 높이는데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위하여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법무부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증홍보대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펴주시는 KBS 황수정 아나운서께 거듭 감사드리며 개식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격려사(激勵辭) - 권재진 법무부장관

존경하는 김진환 대한공증인협회장님, 그리고 공증가족 여러분!

먼저, 여섯 번째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공증

제도 발전과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 주신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님, 신영무 대한변호사회 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귀빈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증 가족 여러분!

올해는 이 땅에 근대 공증 제도가 도



대독: 김태기 법무부차관

입된 지 10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1912년 조선민사령을 통해 시작된 우리 공증 제도는 그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1961년 공증인법 제정 당시 약 10개소에 불과하던 공증사무소는 이제 370개소에 이르고, 그 처리건수도 연간 22만건에서 400만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2010년 10월 국제공증인협회에 77번째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회의를 개최할 만큼 그 역량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공증 가족 여러분이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업무에 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증주간 행사와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 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공증의 유용함을 널리 홍보하고, 아시아지역은 물론 전세계 83개 국제공증인협회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 공증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증인 여러분!

반세기 前 전쟁의 폐허로 UN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올해 10월에는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이라 할 수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고, 15년 만에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다시 진출하는 등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증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지난 2010년 2월 우리는 공증인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증인 자격을 강화하고, 정년제와 전자공증을 도입하는 등 선진공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218만건이었던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건수는 2011년 176만건으로 줄어드는 등 ‘예방사법의 꽃’이라 불리는 공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신뢰는 아직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부동산 인도 등으로 확대하여 채소전화해 남용으로 인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거짓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증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증의 유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200개 이상의 공증사무소를 감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모바일 앱과 SNS를 활용한 공증 홍보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공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증이 예방사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증주간 행사가 공증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뜻깊은 행사를 축하드리며, 공증인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축사(祝辭)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존경하는 대한공증인협회 김진환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국의 공증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대독: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대한공증인협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제6회 ‘공증주간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증제도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시작된 ‘공증주간 선포식’이 벌써 여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해 근대적인 공증제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뜻 깊은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대한공증인협회와 법무부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00년 동안 공증제도는 지속적

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1961년 공증인법이 제정될 당시 전체 공증인수가 약 1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이제는 전국의 공증사무소가 약 370개소에 이르고, 연평균 처리건수는 약 400만건에 달하며, 그 가액은 약 70조원 상단에 이릅니다. 또한, 대한공증인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 국제공증인협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세계 83개국의 회원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증제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공증인 모두의 희생과 봉사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다시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공증인 여러분!

그동안 공증제도가 우리의 법률문화를 한층 성숙시키는데 기여하고, 신뢰사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해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거래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증거로 남기는 법문화적 기반이 무척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며, 재판당사자의 오해와 불만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증의 활성화는 사법의 선진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거래관계에서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증을 적

절하게 활용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사법부는 사후적 해결이 불가피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송남발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더 나아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공증인 여러분 !

공증의 또다른 이름은 신뢰이며, 신뢰는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신뢰사회야말로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증은 국민은 신뢰를 지켜드립니다’라는 올해 공증주간 기치와 공증인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의 중요성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국가가 공적 신뢰를 부여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인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계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췌록 오늘의 이 선포식이 공증의 활성화와 법률문화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모범 공증인으로 선정되어 표창의 영예를 누리시는 공증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공증인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축사(祝辭) -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환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님, 그리고 공증인 여러분!



길태기 법무부차관님,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님을 비롯해 ‘제6회 공증주간 선포식’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증제도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사회가 약속이 지켜지는 선진 신뢰사회로 가기위한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특히 이번 공증주간에는 국제회의인 국제공증인협회(UINL)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정기 회의가 개최되어 더욱 뜻 깊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공증제도가 시행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2년 3월 18일 조선민사령으로 공증제도를 규정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전답이나 가옥, 노비를 사고 팔 때 관(官)에 보고하고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근대적 의미의 공증은 1912년에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증이 시작된 지 100년이나 됐습니다만 유달리 정에 약하고 서로가 믿고 거래한다는 이유로 공증이나 계약보다는 말에 의존하다 보니 법적 시비가 생겼을 때 시비를 가릴 증거가 없는 상황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예방보다 좋은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증제도 시행 100년, 이제 우리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물질적 성장만으로는 결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사회구성원간의 신뢰, 그 신뢰의 그물망이 튼튼할 때 선진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공증제도야말로 신뢰의 그물망을 짚 씨줄과 날줄입니다.

존경하는 공증인 여러분!

여전히 공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건강한 공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대국민 계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공증주간 선포식을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선진 신뢰사회의 기틀을 닦아가도록 다 같이 마음을 모아갑시다.

감사합니다.

7 법무부장관 표창 유공 공증인 주요 약력



△ 좌측부터 법무법인 한길 장현길 대표 변호사, 대전종합 법무법인 김종환 대표 변호사, 길대기 법무부차관, 정차두 공증인

(1) 공증인 정차두

○ 약력(1937. 10. 10. 생)

- 1956. 3.
진해고등학교 졸업
- 1968. 4.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67. 10.
제1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 1968. 4.
민·형사 실무수습(국방부, 서울민사지방법원)
- 1970. 4.
육군 제1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 검찰관 겸 동해방어사령부 법무참모
- 1972. 3.
동해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 1973. 7.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 1976. 2.
육군 제25사단 법무참모

- 1978. 6.
수도군단 보통군법회의 심판부장
- 1979. 3.
변호사 개업(부산지방법변호사회 소속)
- 1981. 3.
부산지방법변호사회 재무이사
- 1981. 8.
부산고법 및 고검 설치추진위 상임위원
- 1984.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구성원 변호사
- 1985. 4.
부산지방법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 1996. 7. ~ 2000. 12.
부산지법 민사, 가사 조정위원
공증인가 구덕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
- 2001. 1. ~ 2005.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대표
- 2005. 11. ~ 현재
공증인 임명(부산지방법검찰청 소속)

○ 공적사항

1. 1978년 수도권단 보통군법회의
심판부장을 역임한 후, 부산지
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개업
한 이래, 1981년 부산지방법변호
사회 재무이사에 임명되면서 변
호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2005년까지 공증인가 법무법
인 삼덕, 공증인가 구덕합동법
률사무소,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의 구성원 및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며, 분쟁의 사
전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제
도로써 공증제도의 유용성과 활

용방법을 지역 사회에 널리 알
리며 변호사의 직무인 인권 보
호와 법률문화 발전 등에 숭선
수범해 왔음.

2. 특히 2005년 11월부터는 변호
사를 휴업, 법무부로부터 공증인
임명을 받으면서부터는 지난 7
년 간 공증인법에 따른 적법한
공증업무 처리는 물론 공증업
무 활성화에 더욱 매진해 오면
서,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
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
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인의
소임을 충실히 실행해 오고 있
고, 공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는 항상 친절과 봉사정신을
실천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존
경을 받고 있음.

3. 또한 2007년 12월, 법무부 공
고 제134호로 입법예고된 공증
인 정년제 도입 주요 골자 공증
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하는 등 공증제도 개선 활동도
적극 펼쳐 오고 있음.

(2) 김종환 변호사(대전종합 법무법인)

○ 약력(1949. 8. 5.생)

- 1968. 2.
김천고등학교 졸업

-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3. 11.
제4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 1974. 4.
공군 중위(군법무관)
- 1984. 11.
공군 중령 예편
- 1984. 12.
변호사 개업(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 1999. 1.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 1993. 4. ~ 현재
공증인가 대전종합 법무법인 대표
- 2008. 1. ~ 현재
부협회장

○ 공적사항

1. 1984년부터 현재까지 약 28년간 대전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인권보호 활동과 국민의 무료법률상담, 민사분쟁 예방에 진력을 다하는 등 한국의 변호사제도 위상을 드높여옴.
2. 1993년부터 현재까지 19년 동안 공증인가 대전종합 법무법인 대표 및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나라 예방사법분야인 공증업무 발전에 이바지해 옴.
3. 특히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대한공증인협회 부협회장에 재임해 오면서 협회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증업무 직역

확대 및 공증인 수수료의 현실화, 업무개선 등을 위한 공증인법 개정 의견 등 각종 공증 관련 법령 개선사항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제시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해 왔고, 협회의 발전과 공증사무소 회원들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4. 또한 최근에는 대전 솔로몬파크에서 진행된 국무총리 주제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현장 보고회 참석자로 참가하여, 무분별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고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방사법 분야 선두에는 공증 제도가 있음을 설명하고, 공증의 직역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공증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3)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

(대표 장현길, 김옥신 변호사)

○ 약력

- 2000. 7.
법무법인 인가(대표 장현길 변호사)
- 2001. 6.
삼성동 공항터미널 사무실로 이전
- 2001. 8.
공증사무소 설치 인가
- 2002. 2.
공동 대표 안원모 변호사 영입
대한공증인협회 설립이사
- 2003. 4.

- 인천 분사무소 설치
- 2005. 7.
- 대전 분사무소 설치
- 2006. 1.
- 안양 분사무소 설치
- 2009. 1.
- 공동 대표 안원모 변호사 탈퇴
- 2010. 2.
- 안양 분사무소 폐쇄
- 2011. 1.
- 공동 대표 김옥신 변호사 선임
- 2010. 5. ~ 현재
- 대한공증인협회 총회 대의원

○ 공적사항

1. 2000년 7월 법무법인 설립 후,
2001. 6. 공증사무소 설치 인가
를 받고, 약 12년간 인가공증인
으로서 예방적 성격의 공증사무
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업무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공
증에 대한 법률적 신뢰도 향상,
공증수요의 증가 및 그 폭을 넓
혀가면서 우리나라 변호사 겸업
공증 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함.
2. 또한 공증실무에 있어서도 공증
인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
공증담당 변호사가 항상 촉탁
인 등을 대면하여 공증 내용과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미비
된 서류는 없는지, 공증 내용이
법률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면
밀히 확인하고, 어려운 법률용

어를 쉽게 설명해 주는 등 공증
사무의 적정성 제고와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인가공
증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함.

3. 특히 협회 임원 및 총회 대의원
으로 활동하면서 협회의 국내
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
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

2012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2012. 1. 1. ~ 12. 31.)

○ 2012. 1. 10. :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4434호)에 대한 의견조회 회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2. 1. 16. :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 질
의 · 회신(인증진술서 및 증인진술서
수수료에 대한 논의) ② 2012년도 사
업계획(안) 검토 ③ 2011년도 회계 결
산(안) 및 2012년도 회계 예산(안) 논
의 ④ 2012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
최 논의 ⑤ 2012년도 제1차 이사회 개
최 논의 ⑥ 2012년도 제1차 운영위원
회 개최 논의 ⑦ 정년 퇴직 회원에 대
한 협회 감사 인사 방안 논의

○ 2012. 2. 13. : 제1차 이사회 겸 제2차 상임
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12년도 사업
계획 승인(원안 추가 의결) ② 공증부
책 조제 및 인증업무 처리 지침 제정
및 시행 추인(원안 의결) ③ 2011년도
회계 결산(안) 및 2012년도 회계 예산
(안) 승인(원안 수정 의결) ④ 2012년
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승인(원안
의결) ⑤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동의
(원안 위임 의결) ⑥ 정부 제출 공증인

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추진
협력 의결

○ 2012. 2. 24. : 대한공증인협회 2012년도
임원 및 대의원(각 임기 2년) 선출 후보자
등록 신청 회원 안내

○ 2012. 3. 12. :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변호사 인감증
명서 유효기간 연장 요청 관련 논의
② 2012. 2. 17.자 조선일보 '유언신
탁' 기사 관련 논의 ③ 2012년도 일반
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수정 예산서
(안) 검토 ④ 2012년도 협회장 등 임원
선출 논의

○ 2012. 3. 26. : 2012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11년도 일반
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 승인(원
안 의결) ②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
금특별회계 예산 승인(원안 의결) ③
총회 대의원 선출(원안 수정 의결) ④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원안 의
결) ⑤ 임원 중 협회장 선출 ⑥ 임원
중 감사 선출 ⑦ 임원 중 부협회장, 상
임이사, 이사 선출권 운영위원회에
위임 의결

▶ 2012/2013년 신임 협회장

□ 김 진 환 [법무법인 충정]

▶ 2012/2013년 신임 감사

□ 최 중 현 [법무법인 효원]

□ 유 정 주 [공증인서부합동사무소]

▶ 2012/2013년 신입 총회 대의원 명단
(총 84개소)

• 서울중앙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8개소)

공증인 장희목 사무소

공증인가 강남제일합동 법률사무소

공증인가 경향합동 법률사무소

공증인가 동아합동 법률사무소

공증인가 소공합동 법률사무소

공증인가 영동합동 법률사무소

공증인가 종로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경원

법무법인 광화문

동방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중

법무법인 두레

법무법인 로투스

법무법인 봄

법무법인 비엔에스

법무법인 새한양

법무법인 세창

법무법인 아시아

법무법인 우원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 태안

법무법인 하나

법무법인 한강

법무법인 한길

법무법인 한반도

법무법인 한별

법무법인 한중

법무법인 호민

• 서울동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공증인 신문식 사무소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법무법인 하나로

• 서울남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4개소)

법무법인 강서

남부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다우

법무법인 안민

• 서울북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법무법인 북부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자유종합 법률사무소

• 서울서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가 고려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위너스

• 의정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법무법인 다윈

법무법인 정인

법무법인 통일

• 인천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5개소)

공증인가 주안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명인

법무법인 부일

법무법인 우리법률

법무법인 황해

• 수원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9개소)

공증인 김병남 사무소

공증인 황재택 사무소

경희 법무법인

법무법인 공평종합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누리

법무법인 대현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우진

평택 법무법인

• 춘천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1개소)

법무법인 율곡

• 대전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공증인가 대전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전제일 법률사무소

서도 법무법인

• 청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 정기호 사무소

법무법인 청주로

• 대구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5개소)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 법률사무소

공증인가 팔공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가야종합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구종합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 부산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5개소)

공증인가 부민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구덕

법무법인 부산동부

법무법인 신성

법무법인 우리들

• 울산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 서보석 사무소

법무법인 원울

• 창원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공증인 강처목 사무소

경남 법무법인

창원 법무법인

• 광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4개소)

공증인가 광주제일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주로펌

법무법인 서석

법무법인 법가

• 전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가 전주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백제종합 법률사무소

• 제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1개소)

법무법인 해오름

○ 2012. 3. 28. :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현장
보고회 참석자 추천 요청에 대한 회신 - 김
종한 부협회장 추천 / 법무부

○ 2012. 4. 3. : 2012년도 '공증과신평' 통
권 제5호 기증(납본, 제공) 안내

○ 2012. 4. 19. : 제4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임원 중 부협회
장, 상임이사, 이사 후보 논의 ② 서울지
방변호사회에서 이첩된 일반인 진정서
처리 방향 논의 ③ 공증업무 질의 · 회
신 재논의 ④ 국제위원회 구성 논의 ⑤
2012년도 공증과신평 통권 제5호 집필
자 원고료 책정

○ 2012. 5. 14. :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임원 중 부협회
장, 상임이사, 이사 후보 논의 및 운영
위원회에 승인 요청 ② 변호사 인감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요청 관련 재
논의

○ 2012. 5. 14.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위원장 호선(법
무법인 두레 노승행 변호사) ② 임원
중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선임 승
인(원안 의결)
▶ 2012/2013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선임 명단
□ 부협회장 (4명)
박 국 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수석)

김 종 환 [법무법인 대전종합]

유 원 규 [법무법인 광장]

김 주 덕 [법무법인 태일]

□ 상임이사 (6명)

총무이사

안 원 모 [법무법인 한덕]

국제이사

박 광 빈 [법무법인(유한) 율촌]

기획이사

김 건 수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회원이사

이 춘 성 [법무법인 일원송헌]

법제이사

남 상 우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재무이사

이 봉 상 [법무법인(유한) 화우]

□ 이 사 (17명)

이 금 원 [공증인 이금원 사무소]

김 양 남 [공증인가 여의도합동
법률사무소]

백 수 일 [영남 법무법인]

이 흥 복 [서정 법무법인]

강 수 림 [성심종합 법무법인]

한 기 찬 [홍익 법무법인]

현 영 두 [공증인 현영두 사무소]

이 상 완 [서울 공증인 합동사무소]

이 태 운 [법무법인(유한) 원]

박 창 현 [법무법인 삼성]

김 태 우 [법무법인 국제]

홍 경 호 [법무법인 정]

김 수 민 [법무법인(유한) 영진]

김 영 곤 [법무법인 호남종합
법률사무소]

채 정 석 [법무법인(유한) 에이팩스]

이 경 우 [법무법인(유한) 한결]

김 영 철 [법무법인 정세]

○ 2012. 5. 16. : 공증인 수수료 산정시 근거
규정 부재 또는 규칙 해석상 불명확한 제반
사례 회원 조사 실시

○ 2012. 5. 16. : UINL 2012년 5월 이사회 토
론 발표자 요청 등에 대한 회신 및 국가보고
서 제출

○ 2012. 5. 25. :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 법무부

○ 2012. 6. 11. :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국제공증인협
회 이사회 참석 결과 보고 및 후속 업
무 논의 ② 공증인 수수료 제반 사례
회원 설문조사에 대한 검토 및 논의
③ 공증부책 인증에 따른 실적회비
부과 관련 사전 논의

○ 2012. 7. 2. : 제7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국제공증인협
회 CAAs 2012년도 정기회의 개최 준
비 관련 논의 ② 제6회 공증주간 시행
시기 등 논의 ③ 공증업무 질의·회
신 논의 ④ 공증인 수수료 제반 사례
회원 설문조사 관련 논의

○ 2012. 7. 4. : 2012년도 연회비 납부 및 과
년도 미납 연회비 납부 회원 안내

○ 2012. 7. 23. :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국제공증인협

회 CAAs 2012년도 정기회의 개최 관련 논의 ② 제6회 공증주간 시행 제반 논의 ③ 공증업무 질의·회신 논의 ④ 공증인 수수료 제반 사례 회원 설문조사 관련 논의

○ 2012. 8. 9. : 질의(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 증서 승계집행문 부여 관련) 회신 / 공증인 △△△

○ 2012. 8. 9. : 질의(승계집행문 부여 관련) 회신 / 법무법인 △△

○ 2012. 8. 27. : 제9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UINL 산하 2012년도 CAAs 정기회의 개최(안) 일부 사항 재논의 ② 공증인 수수료 관련 협회측 의견 제시 방법 재검토 ③ 회원 공증업무 질의·회신 논의 ④ 법무부에서 요청한 공증법령 및 지침 개선 관련 의견 조희 논의 ⑤ 홈페이지 구축 메뉴 검토

○ 2012. 8. 28. : 공증인 수수료 규칙 해석상 불명확한 제반 사례 송부에 따른 유권해석 요청 및 수수료 규칙 개정 필요성 의견 제시 / 법무부

○ 2012. 9. 7. : 공증법령 및 지침 개선 관련 의견 조희 회신 및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재구성 요청 / 법무부

○ 2012. 9. 17. : 제10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부책 인증에 따른 실적회비 도입 관련 규칙 제정 및 금액 논의 ② 법무부에서 검토 요청한 공증인 수수료 규칙 해석에 대한 협회측 의견 검토

○ 2012. 9. 17. :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추천 / 법무부

○ 2012. 10. 5. : 실적회비 징수를 위한 공증부책 조제 및 인증업무 계획 등 회원 안내

○ 2012. 10. 15. : 제11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제6회 공증주간 행사 내용 일부 축소 변경 논의 ② UINL 2012 CAAs 정기회의 진행사항 보고 및 일부 사항 논의 ③ 2012년도 임시총회 의안 최종 검토 및 회원 의견 제시 내용 검토·논의 ④ 공증인 보조자 교육 주제(커리큘럼) 및 강사 선정 논의

○ 2012. 10. 15. :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관한 법무부 유권해석에 대한 협회 의견 제시

○ 2012. 10. 16. : 제6회 공증주간 선포식 유공 공증인 법무부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 방식 변경 요청 / 법무부

○ 2012. 10. 29. : 제2차 이사회 겸 제1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재정규칙 제정안 승인(원안 의결) ②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안 승인(원안 의결) ③ 2013년도 회원 연회비 인하 승인(원안 의결) ④ 2012년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 승인(원안 의결) ⑤ 제6회 공증주간 행사 관련 보고 및 일부 사항 논의(위임 의결) ⑥ UINL 2012 CAAs 정기회의 진행사항 보고 및 일부 사항 논의(위임 의결) ⑦ 협회 정기에금 만기에 따른 재예치 금융권 선정 논의(선택 의결)
- 2012. 11. 5. : 건강한 사회 추진성과 보고 대회 토론자 추천 요청에 대한 회신 / 법무부
- 2012. 11. 12. : 제13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제6회 공증주간 행사 관련 제반 논의 ② UINL 2012 CAAs 정기회의 진행사항 보고 및 일부 사항 논의
- 2012. 11. 12. :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구체적 업무별 진행사항 보고 및 권고(자문) 등 논의
- 2012. 11. 26. ~ 28. : UINL 2012 CAAs 서울 정기회의 개최
- 2012. 11. 26. ~ 30. : 제6회 공증주간 시행
- 2012. 11. 30. : 공증인보조자 교육 시행

- 2012. 11. 30. :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총회 의장(법무법인 한중 송정호 변호사) 및 부의장(공증인가 강남제일합동 반헌수 변호사) 선출 ② 재정규칙 제정 승인(원안 수정 의결) ③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 승인(원안 수정 의결) ④ 2013년도 회원 연회비 인하 승인(원안 수정 의결)
- 2012. 12. 5. : 실적회비 도입에 따른 2013년도 장부 조제 및 인증신청 회원 안내
- 2012. 12. 17. : 제14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 회원 질의·회신 논의 ② 2013년도 공증과신회(통권 제6호) 발간 계획 논의

2012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2012. 1. 1. ~ 12. 31.)

○ 입회 현황 ○

(공증인 임명 및 공증사무소 설치인가 등)

❖ 공증인 문형섭 사무소

- 소속 광주지점

- 임명일 : 2011. 12. 24.(임기 5년)
- 사무소 : 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광주 동구 공동 55-2
2층 (501-040)
- 전 화 : 062-222-3500
- 팩 스 : 062-222-3501
- 입회일 : 2012. 1. 5.

❖ 공증인 박광신 사무소

- 소속 청주지점

- 임명일 : 2011. 12. 30.(임기 5년)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의림동 25-2
3층 (390-030)
- 전 화 : 043-647-5500
- 팩 스 : 043-647-6500
- 입회일 : 2012. 1. 9.

❖ 공증인 심일동 사무소

- 소속 서울서부지점

- 임명일 : 2012. 4. 9.(임기 5년)
- 사무소 : 공증인서부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5

삼문빌딩 201호 (121-020)

- 전 화 : 02-701-6060
- 팩 스 : 02-716-1035
- 입회일 : 2012. 4. 9.

❖ 공증인 김웅지 사무소

- 소속 부산지점

- 임명일 : 2012. 5. 1.(임기 5년)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209호
(611-803)
- 전 화 : 051-507-1933~4
- 팩 스 : 051-505-0484
- 입회일 : 2012. 5. 1.

❖ 공증인 최용현 사무소

- 소속 청주지점

- 임명일 : 2012. 7. 1.(임기 5년)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07 현대빌딩 2층 (501-040)
- 전 화 : 043-292-1300
- 팩 스 : 043-292-1320
- 입회일 : 2012. 7. 2.

❖ 공증인 황상구 사무소

- 소속 서울중앙지점

- 임명일 : 2012. 7. 10.(임기 5년)
- 사무소 : 서소문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4
4층 (100-814)
- 전 화 : 02-3789-6313
- 팩 스 : 02-3789-6310

· 입회일 : 2012. 7. 10

❖ 공증인 김영채 사무소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2. 7. 10.(임기 5년)

· 사무소 : 서소문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4
4층 (100-814)

· 전 화 : 02-3789-6313

· 팩 스 : 02-3789-6310

· 입회일 : 2012. 7. 10.

❖ 공증인 홍성계 사무소

- 소속 춘천지검

· 임명일 : 2012. 7. 6.(임기 5년)

· 소재지 : 강원 강릉시 교동 896-5
한무리빌딩 3층 (210-923)

· 전 화 : 033-643-8503~4

· 팩 스 : 033-643-8505

· 입회일 : 2012. 7. 25.

❖ 공증인 박우순 사무소

- 소속 춘천지검

· 임명일 : 2012. 6. 25.(임기 5년)

· 소재지 : 강원 원주시 학성1동 1040-3
지하 1층 (220-963)

· 전 화 : 033-744-7600

· 팩 스 : 033-746-8811

· 입회일 : 2012. 7. 26.

❖ 공증인 박부건 사무소

- 소속 전주지검

· 임명일 : 2012. 10. 22.(임기 5년)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수성동 1012-1
(580-804)

· 전 화 : 063-535-4003

· 팩 스 : 063-536-4003

· 입회일 : 2012. 11. 2.

❖ 공증인 김수연 사무소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2. 9. 4.(임기 5년)

· 사무소 : 안연김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8
대영빌딩 304호 (100-864)

· 전 화 : 02-598-4411

· 팩 스 : 02-598-4415

· 입회일 : 2012. 12. 27.

❖ 공증인 김봉환 사무소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2. 9. 13.(임기 5년)

· 사무소 : 세화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남산동1가 6-3
창영빌딩 201호, 202호
(100-041)

· 전 화 : 1899-3832

· 팩 스 : 02-6008-8245

· 입회일 : 2012. 12. 3.

❖ 법무법인 대전합동

- 소속 대전지검

· 인가일 : 2012. 11. 12.

· 대 표 : 유재복 변호사

- 소재지 : 대전 서구 둔산동 1391
서림빌딩 301호 (302-120)
- 전 화 : 042-488-1003
- 팩 스 : 042-472-2070
- 입회일 : 2012. 11. 12.

○ 회원 탈회 ○

(공증인 면직 및 공증사무소 인가취소 등)

- ❖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 대 표 : 김진우 · 황길수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빌딩 1301호
 - 탈회일 : 2012. 1. 2.

- ❖ 공증인가 한양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김용철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6
성문빌딩 201호
 - 탈회일 : 2012. 1. 4.

- ❖ 법무법인 운산
 - 대 표 : 김수철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1
정곡빌딩 남관 102호
 - 탈회일 : 2012. 1. 26.

- ❖ 법무법인 지평지성
 - 대 표 : 강성 · 양영태 · 조용환 ·
이공헌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 상공회의소빌딩 11층
- 탈회일 : 2012. 2. 15.

❖ 공증인가 일양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이태훈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잠원동 37-12
논현빌딩 501호
- 탈회일 : 2012. 2. 27.

❖ 공증인가 강북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전병덕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96-2
상림빌딩 601호
- 탈회일 : 2012. 3. 20.

❖ 공증인가 필동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이선중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필동1가 39-1
국제빌딩 3층
- 탈회일 : 2012. 3. 20.

❖ 공증인 이진영(공증인서부합동)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5
삼문빌딩 201호
- 탈회일 : 2012. 4. 6.

❖ 공증인가 새한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강봉근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무교동 32-2
남강빌딩 601호
- 탈회일 : 2012. 4. 10.

❖ 공증인가 부민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장남수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208호
- 탈퇴일 : 2012. 5. 1.

❖ 공증인가 경기제일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박봉규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195-3 남부빌딩 3층
- 탈퇴일 : 2012. 5. 21.

❖ 법무법인 프라임

- 대 표 : 이광렬 · 이문호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53
문산빌딩 2층, 3층
- 탈퇴일 : 2012. 5. 22.

❖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박일재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75-9
미려빌딩 501호
- 탈퇴일 : 2012. 5. 23.

❖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김영준 · 신창동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4
규명빌딩 2층
- 탈퇴일 : 2012. 5. 31.

❖ 공증인 김중환 사무소

- 소재지 : 강원 강릉시 교1동 896-5

강원전산빌딩 3층

- 탈퇴일 : 2012. 6. 5.

❖ 공증인 황재택 사무소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5
신흥빌딩 601호
- 탈퇴일 : 2012. 7. 1.

❖ 공증인 서철모 사무소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07
2층
- 탈퇴일 : 2012. 7. 1.

❖ 법무법인 여산

- 대 표 : 권대열 변호사
- 소재지 : 인천 남구 학익동 252-6
학익빌딩 2층
- 탈퇴일 : 2012. 7. 31.

❖ 법무법인 세헌

- 대 표 : 정 운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중구 중앙동6가 12
국제빌딩 3층
- 탈퇴일 : 2012. 9. 10.

❖ 법무법인 대일

- 대 표 : 정갑성 · 홍영호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송빌딩 301호
- 탈퇴일 : 2012. 9. 24.

❖ 법무법인 비엔에스

- 대 표 : 손우근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소공동 91-1
서울센터빌딩 901호
- 탈회일 : 2012. 9. 24.

2층

- 탈회일 : 2012. 12. 28

◆ 법무법인 대한

- 대 표 : 김요한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7층
- 탈회일 : 2012. 10. 26.

◆ 법무법인 선우

- 대 표 : 서종식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5
한승아스트라 9층
- 탈회일 : 2012. 11. 9.

◆ 공증인가 대전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김형태 변호사
- 소재지 : 대전 서구 둔산동 1391
서림빌딩 301호
- 탈회일 : 2012. 11. 12.

◆ 법무법인 대유

- 대 표 : 전 원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3
재영빌딩 3층
- 탈회일 : 2012. 11. 28.

◆ 공증인가 무등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김용구 변호사
- 소재지 : 광주 동구 대의동 13-2

공증과신평 (2013 통권 제6호)

발행일	2013년 3월 25일
발행인	김진환
편집인	안원모
발행처	대한공증인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8-1번지 변호사회관 403호, 404호 (137-885) 전화 : (02)3477-5007 팩스 : (02)3476-5551 전자우편 : koreanotary@naver.com
디자인	디자인수
편집	전화 : (031)608-9981~2 팩스 : (031)608-9980 전자우편 : design-soo@hanmail.net

Notary and Public Faith (Vol. 6 2013)

Published	Mar 25. 2013
Publisher	KIM Zin-Hwan
Editor	AHN Won-Mo
Published by	Korean Notaries Association
Address	#403~404, 1718-1, Seocho3-dong,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77-5007 Fax. +82-2-3476-5551 E-mail. koreanotary@naver.com